##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16 발의연월일: 2025. 5. 14.

발 의 자:고동진・이달희・박덕흠

박준태・박성훈・강승규

서일준 · 강선영 · 성일종

박정훈 • 백종헌 • 이인선

강명구 · 안상훈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양성 교육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학 협력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가운데,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'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'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,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·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, 반도체, 이차전지,

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이상 네 가지 분야로 특정되어 있는 바,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제외되어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.

이에 '인공지능 산업'을 '국가첨단전략산업'에 포함시킴과 동시에,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, 인공지능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,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
법률 제 호

###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산업으로서"를 "산업으로서 반도체, 인공지능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"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원을 할 수 있다"를 "지원을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국가첨단전략산업"(이하	2
"전략산업"이라 한다)이란 전	
략기술을 연구・개발 또는	
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	
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	
<u>산업으로서</u> 산업통상자원부	산업으로서 반도체, 인공지
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	능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
한다.	<u>이오 등</u>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~
제3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	제3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
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 ① 정	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 ①
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	
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	
인력양성을 위하여 「산업교육	
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	
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	
산업교육기관(이하 "산업교육	
기관"이라 한다)에 같은 법 제	
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	
학과 및 학부(이하 "계약학과	

등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정부는 「산업발전법」 제1 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토대 로 제1항에 따른 <u>지원을 할 수</u> 있다.
-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지원할 수 있다</u>.
- ④ (생략)

지원하여야 한다.
②
<u>지원을 하여야</u>
한다.
③
<u>\textbf{\Z}</u>
원하여야 한다.
④ (현행과 같음)